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의원 : 최정훈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3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개정이유

- 통상 새마을 지도자의 범위에는 새마을회의 4개 회원단체(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 직·공장회) 지도자를 말하지만, 현재 조례상 제1조의 새마을지도자의 정의와 제8조 추천자의 범위에 직·공장회가 미포함 되어 있기에 이를 추가하여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새마을 지도자의 정의(안 제1조)
 - 새마을 지도자의 정의에 직·공장 지도자 포함
- 장학생 신청자에 직·공장회장 포함 및 추천자를 시군 새마을 회장으로 통일(안 제8조)
 - 시군 새마을회가 법인 등록 전에는 지군 지회장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법인 등록이 되어 시군 새마을회장 명칭만 사용됨

- 위원회에 위원이 성별·경력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

5.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통상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범위에 속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 직·공장회 중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는 새마을 직·공장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의 정의에 새마을 직·공장회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제1조에 새마을 지도자의 정의에 새마을 직·공장회를 포함하고,

둘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추천에 새마을 직·공장회를 포함하고,

셋째, 충청북도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을 시·군새마을회장으로 통일하는 것임.

새마을지도자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 직·공장회가 포함되나 충청북도에는 새마을 직·공장회가 빠져 있어 이를 개정하고, 충청북도새마을회 시·군지회가 모두 법인등록을 마침에 따라 충청북도새마을회 시·군지회장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